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3월 10일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3년 2월 24일

나. 발 의 자: 전철규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3년 2월 27일

라. 상정일자: 제29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3. 3. 7.)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전철규 의원)

□ 제안이유

「주민투표법」 개정(법률 제18849호, 2022. 4. 26. 공포·시행)에 따라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및 주민투표청구의 전자서명 도입 등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투표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14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하여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재외국민, 거소 용어 삭제(안 제2조, 제8조 및 제9조)

나. 외국인 주민투표권자 연령 규정 삭제(안 제3조)

다. 주민투표 대상 관련 개정(안 제4조)

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투표청구 인원 완화(안 제5조)

마.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정비(안 제8조)

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및 제13조)

사. 조례안 개정사항 관련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5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주민투표법」

나. 협조부서: 자치행정과

다. 입법예고(2023. 2. 27. ~ 2023. 3. 6.) 결과: 의견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장석현)

가. 개정 취지

-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연령의 하향 조정 및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 도입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인원수를 기존 14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하여 주민투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안 제2조는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 재외국민에 대해서 더 이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외국민’ 용어 삭제
- 안 제3조는 「주민투표법」 제5조에서 외국인주민투표권자 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어 ‘19세 이상’ 삭제
- 안 제4조는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 주민투표의 대상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 직접 규정하여 관련 내용 개정
- 안 제5조는 주민자치 및 주민투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청구 주민의 수를 14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함

- 안 제8조는 상위법인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전자서명제도를 도입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청구인서명부 작성시 전자서명의 방식으로 서명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안 제12조 ~ 제13조는 「주민투표법」 제12조의2 신설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관련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그 외에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5호서식) 및 띄어쓰기, 문맥상 적절한 용어로 개선하는 등 일부 미비한 사항 정비

다.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투표 청구권자의 연령 삭제 및 전자서명제도 도입 등 현행법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 투표청구 주민의 수를 14분의 1에서 20분의 1로 완화¹⁾하는 것은 주민자치와 주민투표 제도 활성화 취지에 적합하다고 보며, 상위법인 「주민투표법」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의 실시요건²⁾에 부합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1) 주민투표 청구 주민의 수 완화 ※ 2022. 11월 통계청 자료 기준

관내 투표인구(만18세 이상)	기존(1/14)	완화(1/20)	비고
499,224명	35,444명	24,961명	10,483명(29.5%) 감소

2) 「주민투표법」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②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법령 1부.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 제1항에 따른 투표인 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 (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

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